

#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작성지침 제안을 위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posal of Guideline for Uniform Title of Legal Works

이 은 주 (Eun-Ju Lee)\*\*

### 목 차

- |                        |                       |
|------------------------|-----------------------|
| 1. 서론                  | 4.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작성지침(안) |
| 2. 법률저작의 목록규칙          | 5. 결론                 |
| 3. 도서관의 입력지침 및 적용사례 분석 |                       |

### 초록

본 연구는 국내 도서관 현장에 적용가능한 통일된 형식의 우선표제 작성지침 제안을 목적으로 두고, 법률저작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 국내·외 목록규칙 중 RDA, NCR, KCR2, KCR5 개정안을 대상으로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그리고 전거형접근점 규칙을 분석하고, (2) LC, DNB, 북미권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입력지침과 입력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실제 적용되는 방식을 분석한 후, (3) 국립중앙도서관 법률저작의 서지데이터를 임의추출하여 통일표제의 적용범위를 검토해보고 통일표제 작성지침 개발시 고려할 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4)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작성지침 초안을 도출한 후,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진의 검토와 법률 및 통일표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추가적인 데이터는 업무담당자와의 이메일 면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보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guideline for uniform title of legal work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study (1) reviewed the uniform title and authority access points of legal works targeting RDA, NCR, KCR2 and KCR5, (2) analyzed the actual application methods by investigating the guideline and bibliographic data for uniform title for legal works targeting LC, DNB, and university libraries, (3) examine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uniform title in the bibliographic data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suggested points to consider when developing guidelines for uniform title. Based on this, (4) a draft guideline for creating uniform title for legal works was formulated. The draft was revised after review by a librarian and consultation with experts, and then the final draft was proposed. The data were obta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s and case studies, and additional data were obtained through e-mail interviews and expert advice.

키워드: 법률저작, 통일표제, 우선표제, 전거형접근점, 한국목록규칙

Legal Works, Uniform Title, Preferred Title, Authorized Access Point, Korean Cataloging Rules

\*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음악, 종교, 법률 저작의 통일표제 구축방안 연구』(2023)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임.

\*\* 동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ejulee@deu.ac.kr / ISNI 0000 0004 6335 8325)

논문접수일자: 2024년 1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24년 2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24년 2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8(1): 329-349, 2024. <http://dx.doi.org/10.4275/KSLIS.2024.58.1.329>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정보조직의 목적은 소장하는 자원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념모형과 목록원칙, 목록규칙, 인코딩 형식들이 상호유기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정보조직의 구현 방법은 정보자원의 다양화와 급속한 정보처리 환경의 변화로 인해 더욱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FRBR 개념모형의 각 개체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4개체가 목록규칙(RDA)과 인코딩 형식(BIBFRAME)에 반영됨에 따라 구현형 단위의 서지레코드에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레코드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이미화, 2016, 76).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의 구조적 연결을 위해 필요한 전거형접근점(authorized access point)은 그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전거형접근점은 여러 구현형에 다양한 표제가 있는 경우 저작의 모든 구현형 기술을 집중시키고 동일한 표제를 가진 2개 이상의 저작이 있을 경우 이를 구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노지현, 이미화, 이은주, 2023, 235). 전거형접근점의 구성요소인 ‘우선표제’(preferred title)는 저작을 식별하기 위해 선정된 표제나 표제형식으로, 동일 저작에 속하는 다양한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나타나는 여러 표제 중에서 대표 표제를 의미하며, 하나의 저작이 하나의 구현형만을 가질 경우 별도의 식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현형의 표제가 우선표제가 된다.

이러한 우선표제는 AACR2에서부터 존재한 개념인 통일표제와 연결된 개념이다. 특히, 통일표제를 적용하는 음악, 종교, 법률저작은 다양한 형식의 표제를 가지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유형의 저작은 통일된 형식의 우선표제를 기록하기 위한 엄격한 규칙이나 별도의 지침이 요구된다. 가령, 종교경전의 통일표제는 구현형에 나타나 있는 표제와 무관하게 “성경. 신약”, “성경. 고린도서”, “불경. 능엄경” 등의 일관된 방식으로 기술하며, 법률저작의 통일표제는 구현형의 표제와 별도로 법률의 간략 표제나 인용표제 혹은 공식표제 등으로 기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목록규칙에서는 음악, 종교, 법률저작을 위한 별도의 통일표제 지침을 마련하고, 통일표제의 선정과 기록을 위한 규칙을 두고 있다.

RDA 역시 동일하게 저작, 표현형을 나타내는 접근점의 작성 규칙에 음악, 종교, 법률저작을 위한 통일된 형식의 우선표제 작성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KCR4는 2003년에 서지기술을 중심으로 규칙이 작성되어 있어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서관 현장에 적용가능한 통일된 형식의 우선표제 작성지침 개발을 목적으로 두고, 법률저작에 집중하여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법률저작에 집중하는 까닭은 음악저작의 통일표제 관련 논의는 예전부터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종교저작에 대한 논의는 KCR 개정과 관련하여 최근에 진행된 바 있으나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관련 논의는 국내에서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손정표, 2005; 2007; 이미화, 2018; 노지현, 2021; 2023).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그리고 전거형접근점 관련 국내·외 목록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작성지침이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RDA, NCR, KCR2, KCR5 개정안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둘째, 별도의 통일표제 입력지침을 가지고 있거나 법률저작의 전거레코드를 MARC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국외 주요 도서관을 선정하여 입력지침과 입력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실제 적용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법률저작의 서지데이터 약 5만건을 임의추출하여 통일표제의 적용범위를 검토해보고 통일표제 작성지침 개발 시 고려할 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작성지침 초안을 도출하였다. 작성된 초안은 국가서지과 실무진의 검토와 법률 및 통일표제 전문가 2인의 자문을 거쳐 수정작업을 진행한 후 최종안을 제안하였다.<sup>1)</sup>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도서관 사례분석시 필요한 추가 데이터는 업무담당자와의 이메일 면담을 통해 확보하였다. 그리고 법률저작의 특징에 대한 자문과 통일표제 적용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관련 세부 내용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샘플레코드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적용범주를 검토한 뒤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 2. 법률저작의 목록규칙

이 장에서는 국내의 목록규칙 중 RDA, 일본 목록규칙(이하 NCR), 한국목록규칙 수정판(이하 KCR2) 및 현재 개정 중인 5판(이하 KCR5 개정안)에 기술된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선정과 기록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각 목록규칙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 2.1 RDA

먼저, RDA에서 법률저작의 우선표제 선정과 기록방법은 일반 저작의 사용법에 따라 기록한다. 다만, 다양한 유형의 법률저작 중 ① 법률 등과 ② 조약집은 <표 1>과 같이 통일된 형식의 우선표제를 선정·기록한다.

또한 우선표제 작성시 하나의 법률저작과 동일한 표제를 가진 상이한 저작을 구별할 필요가 있거나, 하나의 법률저작과 개인·가계·단체의 이름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① 법률저작의 일자(법률의 공포일자 등, 조약의 일자 등), ② 법률저작의 기타 식별특성(저작의 형식, 저작의 일자, 저작의 원생산지 이외의 특성), ③ 조약 참여자를 우선표제에 추가로 기록한다.

이러한 우선표제를 근거로 법률저작의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하는데, 법률저작의 전거형접근점도 ① 법률 등과 ② 조약

1) 국가서지과 실무진의 검토는 초안 발표 후 의견수렴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초안에 대한 수차례 질의응답과 수정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은 법률전문가 1인, 통일표제 전문가 1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법률저작의 특성과 국내 법률저작 발행동향 등에 대한 파악을 위해 법학전문가와의 자문 2회, 통일표제 작성지침 초안에 대한 문헌정보학과 교수와의 자문 1회를 진행하였다.

〈표 1〉 RDA의 법률저작 우선표제 선정 기준과 기록방법

구분		우선표제의 선정 기준과 기록방법
법률 등	현대법	법령집 등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을 기록 ㉠ 공식적 간략표제 혹은 인용표제 ㉡ 법률 문헌에서 사용된 비공식 간략표제 혹은 인용표제 ㉢ 편집물의 공식표제 ㉣ 편집물이 알려진 기타 공식적 표시
		단일 법령 등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을 기록 ㉠ 공식적 간략표제 혹은 인용표제 ㉡ 법률 문헌에서 사용된 비공식 간략표제 혹은 인용표제 ㉢ 법령의 공식표제 ㉣ 기타 공식적 표시(예: 법령번호, 일자)
	고대법, 중세법, 관습법 등	고대법, 중세법, 관습법 등의 편집물, 또는 단일의 고대법, 중세법, 관습법 등은 일반 저작의 사용법에 따름
조약집	단일 조약집	둘 또는 그 이상간의 조약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을 기록 ㉠ 조약의 공식표제 ㉡ 법률 문헌에서 사용된 간략표제나 인용표제 ㉢ 조약이 알려진 기타 공식적 표시
	조약집 (조약의 합집)	조약집이 종합적인 이름으로 식별되는 경우, 이를 우선표제로 기록하고, 종합적인 이름으로 식별되지 않는 경우, 일반 저작의 사용법에 따름. 편집물 내의 단일 조약의 경우, 단일 조약집에 따라 기록

집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sup>2)</sup> 먼저 ① 법률 등은 ‘단일 국가에 적용되는 법률’, ‘둘 이상의 사법권에 적용되는 법률’, ‘법안’, ‘고대법, 중세법, 관습법, 부족법’(tribal laws)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전거형접근점의 표기 방식을 구분한다.

- 단일 국가에 적용되는 법률은 법률의 우선표제+법률이 적용되는 사법권을 나타내는 전거형접근점을 결합한다.
- 둘 이상의 사법권에 적용되는 법률은 우선표제 단독으로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한다.

- 법안은 해당 입법기관의 전거형접근점+법안의 우선표제로 작성한다.
- 고대법, 중세법, 관습법, 부족법은 법률이나 초기 법률 편집본의 알려진 표제, 그리고 법률 등이 포함된(별표제를 제외한) 자료의 본표제 순으로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한다.

이에 더해 ② 조약집은 ‘단일의 조약’, ‘조약의 의정서 및 기타 부속적인 협정서’, ‘종합표제가 있는 조약집’에 따라 전거형접근점의 표기 방식을 구분한다.

2) RDA에서는 법률저작의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 기록방법을 ① 법률 등, ② 법률이 아닌 행정규제 등, ③ 재판소 규칙, ④ 국제정부간 및 비사법단체의 헌법, 헌장 등, ⑤ 조약, 국제협약 등, ⑥ 관례, 법률인용, 법률요약집 등, ⑦ 재판절차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통일표제(RDA에서는 우선표제)를 사용하는 전거형접근점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① 법률 등과 ② 조약집에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 단일의 조약은 조약의 우선표제 단독으로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한다.
- 조약의 의정서 및 기타 부속적인 협정서는 조약의 전거형접근점+Protocols, etc.+의정서 등의 일자로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한다.
- 종합표제가 있는 조약집은 종합표제+조약의 일자로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한다.

## 2.2 NCR

일본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한 NCR 2018년판은 2010년 발표된 RDA를 적극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NCR 2018년판의 규칙 전문 중 법률저작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NCR에 명시된 법률저작은 법률, 주문, 법원규칙, 헌장, 조약, 판례집, 재판 기록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때, 통일된 형식을 사용하는 우선표제는 법령이 아닌 ① 법률 등과 ② 조약이며, NCR에서는 단일법률을 일본 법률과 외국법률로 보다 상세하게 구분짓고 있다. RDA와 상이한 단일법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NCR에서 제시하는 우선표제의 추가 요소는

RDA와 동일하며, 통일표제가 적용되는 법률저작의 전거형접근점 역시 RDA와 동일하게 ① 법률 등과 ② 조약집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단일의 사법권에 적용되는 법률 중 사법권의 적용이 일본인 경우는 우선표제 단독형태로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한다는 점”과 “전근현대법, 관습법, 부족법 등은 우선표제 단독형태로 작성하지만 필요에 따라 지역에 대한 전거형접근점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은 RDA와 상이한 부분이다.

## 2.3 KCR2와 KCR5 개정안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KCR4는 접근점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루고 있는 KCR2와 KCR5 개정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KCR2에서는 ‘기본기입의 선정(제1부)’과 ‘표목형식(제2부)’에서 법률저작에 대한 접근점의 규정을 다루고 있다. KCR2에서는 RDA와 달리 우선표제와 전거형접근점의 작성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고대법전(35장), 헌법(64장), 법령(65장), 대통령령(66장), 부령,

<표 2> NCR의 법률저작 우선표제 선정 기준과 기록방법

구분			우선표제의 선정 기준과 기록방법
법률 등	근현대 법률 등	일본 법률	일본의 단일 법률 등의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표제 선정 (a) 일반적인 약칭 법률명 목록에 게재된 약칭 (b) 제목 또는 건명
		외국법률	외국의 단일 법률 등의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표제 선정 (a) 공식적인 약칭 또는 인용표제 (b) 법률 문헌에서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약칭 또는 인용표제 (c) 공식적인 제목 (d) 기타 공식적인 표시(예: 법률 번호, 날짜) * 별법: 외국의 단일법률 등에 대해서는 그 법률 등의 구체적 형태 또는 참고자료에 의해 가장 잘 알려진 일본어 번역표제를 선정. 일본어 번역 표제가 불분명한 경우, 원어 표제를 선정

예규 및 조례(67장), 조약(68장)으로 구분지어 제시함으로써 타 목록규칙에 비해 통일표제 적용 범위가 광범위함을 확인할 수 있다(〈표 3〉 참조).

반면 KCR5 개정안은 RDA와 거의 유사하나, 법령이 아닌 법률을 대상으로 통일된 형식의 우선표제를 사용한다는 점과 단일 관할권역에서 시행되는 법률에 대한 기록방법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KCR2와 KCR5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저작의 우선표제 선정

기준과 기록방법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KCR2는 우선표제와 전거형접근점 기록방법의 구분이 없는 반면, KCR5 개정안은 RDA를 기반으로 개정작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RDA 체제와 동일하게 우선표제 선정과 기록, 전거형접근점 기록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KCR5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저작의 추가요소(법령저작의 일자, 법령저작의 기타 식별특성, 조약참여자) 역시 RDA와 동일

〈표 3〉 KCR의 법률저작 우선표제 선정 기준과 기록방법 비교(KCR2 vs. KCR5 개정안)

		KCR2	KCR5 개정안	
법률 등	헌법	헌법은 “국명” 또는 “주명”을 표목으로 하고 “헌법”을 부표목으로 함 상이한 헌법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포년을 부기함	법률	법률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을 기록 ㉠ 공식적 간략표제 혹은 인용표제 ㉡ 법률 자원에서 사용된 비공식 간략표제 혹은 인용표제 ㉢ 법률이나 법률집의 편집물의 공식표제 ㉣ 기타 표시(예: 법률번호, 일자 등)
	법령	법령집은 “국명”을 표목으로 하고 “법령집”을 부표목으로 함 개개의 법률은 “국명”을 표목으로 하고 “법률명”을 부표목으로 함 법령 또는 예규에 대한 주석서는 “주석자”를 표목으로 하고, 법령집이나 예규집을 편집 또는 발췌한 경우에는 “편자”를 표목으로 함		
	대통령령	대통령령은 “국명”을 표목으로 하고 “대통령령”을 부표목으로 하며, 대통령의 성명을 원괄호에 넣어 부기함	법률집	종합표제가 있는 법률집은 이를 우선표제로 기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률집 내의 개별 법률명을 각각 기록
	부령, 예규, 조례	부령, 시, 도, 군과 행정관서의 예규 및 조례는 각각 그 “부처, 시, 도, 군 또는 각급 관서명”을 표목으로 하고 “부령” 또는 “예규”를 부표목으로 함		
	고대 법전	고대법전은 정식명칭이나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법률명 또는 서명을 표목으로 함		
조약	조약	한 나라와 외국과의 조약집은 그 나라 “국명”을 표목으로, “조약집”을 부표목으로 함 한 국가와 특정 국가와의 조약집은 “특정 국가명”을 부표목 다음에 원괄호로 묶어서 부기 여러 국가 간의 조약집은 참가국 중 맨 처음에 표시된 “국가명”을 표목으로 하고 그 이외 국명 및 조약명을 부출 또는 참조함	조약	다자간 조약은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을 기록 ㉠ 조약의 공식표제 ㉡ 법률 자원에서 사용된 간략표제나 인용표제 ㉢ 조약이 알려진 기타 공식적 명칭
			조약집	종합표제가 있는 조약집은 이를 우선표제로 기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약집의 개별 조약 명칭을 각각 기록

하다. 이에 더해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은 ① 법률 등, ② 조약으로 구분하되, RDA와 상이한 점은 다음과 같다.

- 단일 관할권역에서 시행되는 법률에 대한 전거형접근점은 법률의 우선표제+관할권역에 대한 전거형접근점을 결합한다. 다만, 관할권역이 한국인 경우, 우선표제 단독으로 적용한다.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경우, 우선표제+국회로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한다.
- 법률명으로 식별되는 고대법, 근대법, 관습법은 전거형접근점 단독형으로 작성한다.

요약하면 법률저작의 우선표제와 전거형접근점의 선정과 기록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RDA, NCR, KCR2, KCR5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KCR2는 부령, 예규, 조례까지 통일된 방식으로 우선표제를 표기하게 함으로써 타 목록규칙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의 통일표제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RDA는 헌법, 법률, 명령, 시행규칙까지 통일표제를 적용하는 반면, NCR과 KCR5 개정안은 헌법, 법률까지 그 적용범위를 두고 있어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범위의 상이함과는 별도로 '법률 등'과 '조약'을 다른 법률저작에 대해 통일된 형식의 우선표제를 기록한다는 점은 동일하였다. 물론 일부 규칙이 상이하긴 하지만 사례로 살펴본 4개의 목록규칙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우선표제와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도서관의 입력지침 및 적용사례 분석

도서관에서는 목록규칙과는 별도로 자관 혹은 해당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 별도의 입력지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주요 국가도서관 및 북미권 대학도서관의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입력지침을 살펴보고, 입력지침이 적용된 실제 서지데이터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통일표제 입력지침을 공개하고 있는 미의회도서관(LC), 독일국립도서관(DNB)과 더불어 북미권 대학도서관 중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 예일대학(Yale University),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의 도서관 사례를 분석하였다.

#### 3.1 미의회도서관

미의회도서관(이하 LC)은 Library of Congress-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이하 LC-PCC)의 구성멤버로, 법률저작의 전거형접근점 입력지침은 RDA 툴킷에서 제공하는 LC-PCC policy statements(이하 LC-PCC PS)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LC-PCC PS는 RDA의 규칙과 상이하게 적용되거나 선택지(option)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를 명시하는 규칙으로, RDA에서는 둘 이상의 사법권에 적용되는 법률의 경우 <법률의 우선표제>만을 전거형접근점으로 사용하는 반면, LC-PCC PS는 <법률의 우선표제+사법권을 나타내는 전거형접근점>을 적용한다는 점이 상이하며, 그 외에는 RDA를 그대로 따른다.

LC-PCC PS를 적용하는 LC의 법률저작 입

력사례는 2가지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LC에서 구축한 전거형접근점 LC Authorities에서 입력된 전거데이터로 확인하였고, 전거형접근점이 적용된 법률저작의 구현형 사례를 살펴 보기 위해 LC Catalog에서 서지데이터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거데이터 입력사례는 LC-PCC PS에서 통일된 우선표제를 사용하는 ‘법률 등’(법률, 법안, 고대법, 중세법, 관습법)과 ‘조약’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표 4〉 참조).

전거데이터에 더해 전거형접근점이 서지레코드에 실제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LC 상세검색에서 통일표제(Title Uniform(KTUT))로 필드제한하여 “Copyright Act”(저작권법)와 “Treaty of Versailles”(베르사유 조약)를 검색하였다.

먼저, ‘법률’(사례: Copyright Act)과 관련한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을 입력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법률의 공식내용을 다룬 저작의 통일표제와 법률 원문 전체

가 부록으로 포함된 저작의 통일표제 입력형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률의 공식내용을 다룬 저작의 통일표제는 전거형접근점을 고려하여 110 필드(법령이 적용되는 전거형 접근점)와 240 필드(법률명)를 결합하여 표현하지만, 법률 전체가 부록으로 포함된 저작의 통일표제는 710 필드의 ▼a와 ▼t를 활용하여 표기함으로써 상이하게 입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저작이라고 하더라도 법률 자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통일표제(110 필드 혹은 130 필드)를 작성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저작의 해석이나 해설이 위주인 법률저작은 통일표제를 작성하지 않고, 개인·가계·단체의 일반 저작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에는 “주제명 부출표목-통일표제”(630 필드) 혹은 “주제명 부출표목-일반주제명”(650 필드)에 주제명으로 기록한다.

요약하면 통일표제를 적용하는 법률저작이 법률 자체에 비중을 두는지, 부록으로 법률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지, 편집, 주석, 주해, 비평

〈표 4〉 LC의 법률저작 전거레코드 입력사례

하나의 사법권에 적용되는 법률	법안
110 1℔ ▼aCanada, ▼tCanada Corporations Act 410 1℔ ▼wnnaa ▼aCanada, ▼kLaws, statutes, etc, ▼tCanada corporations act 670 0℔ ▼aCanada. Laws, statutes, etc, ▼bCanada corporations act ..	110 10 ▼aAndhra Pradesh (India), ▼bLegislative Assembly, ▼tBill to Amend the Hindu Succession Act, 1956 in its Application to the State of Andhra Pradesh 410 10 ▼aAndhra Pradesh (India), ▼bLegislative Assembly, ▼tL. A. Bill of No. 12 of 1983
고대법, 중세법, 관습법, 부족법	조약
130 00 ▼aCode of Hammurabi 430 00 ▼aCodex Hammurapi 670 0℔ ▼aCruveilhier, P. Commentaire du Code d’Hammourabi, 1938.	130 00 ▼aConcordat of Worms ▼d(1122 September 23) 380 0℔ ▼aConcordats ▼2lcsh 410 2℔ ▼aCatholic Church, ▼tTreaties, etc. ▼gHoly Roman Empire ▼d1122 September 23



〈표 5〉 LC의 법률저작 서지레코드 입력사례

법률의 공식내용을 다룬 저작	법률 원문 전체가 부록으로 포함된 저작
110 1ℳ ▼aCanada	245 04 ▼aThe annotated Copyright Act / ▼cNormand Tamaro
240 10 ▼aCopyright Act	246 1ℳ ▼aCopyright Act
245 10 ▼aCanadian Copyright Act annotated / ▼ceditors-in-chief, Hugues G. Richard ... [et al.].	700 1ℳ ▼aTamaro, Normand, ▼d1956-
700 1ℳ ▼aRichard, Hugues G.	710 1ℳ ▼aCanada. ▼tCopyright Act
조약의 공식내용을 다룬 저작	조약 원문 전체가 부록으로 추가된 저작
130 0ℳ ▼aTreaty of Versailles ▼d(1919 June 28)	245 04 ▼aThe peace treaties: ▼bcomprising the league of nations covenant, digest of the German treaty, digest of the Austrian treaty, with annotations by the American mission at the peace conference
245 10 ▼aConditions de paix. ▼bConditions of peace ...	730 0ℳ ▼aTreaty of Versailles ▼d(1919 June 28)
710 2ℳ ▼aAllied and Associated Powers (1914-1920)	

등 저작의 다른 의도를 중점으로 다루었는지에 따라 통일표제의 적용 유무 및 사용 필드를 달리하고 있다. 이는 표제가 아니라 저작의 내용을 보고 사서가 직접 판단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서가 자료를 검토 후, 통일표제의 적용여부에 따라 세 가지의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첫째, 법률 자체를 다루고 있는 저작(법전이지만 다양한 표제로 표현되는 저작)은 110 필드와 240 필드, 조약은 130 필드를 활용한다. 둘째, 법률 원문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 저작(저자 등의 지적책임은 개인·가계·단체에 있고, 부록으로 법률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저작)은 710 필드 혹은 730 필드를 활용한다. 셋째, 법률 자체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편집, 주석 또는 해설 등 출판물의 지적인 책임이 개인·가계·단체 등 다른 곳에 있는 저작은 630 필드 또는 650 필드를 활용하여 주제어로 일관되게 기술한다.

### 3.2 독일국립도서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독일어권 국가들의 전문가로 구성된 RDA 실무그룹에서는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독일어권 국가에서 RDA 시행을 위한 적용지침인 『독일어권 지역 지원 가이드라인』(Anwendungsrichtlinien für den deutschsprachigen Raum D-A-CH)을 작성하였다. 『독일어권 지역 지원 가이드라인』에서는 법률저작에 대한 별도의 적용지침을 가지며, RDA에 규정된 법률저작 관련 용어와 범주를 기반으로 한다. 특히, 독일국립도서관(이하 DNB)은 법률저작의 네 가지 유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① 입법기관, 국제 조약의 법률 및 규정, ② 법률 적용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 자료(예: 법원판결문)와 법적 소송절차에서 나온 문서, ③ 법률적 논평과 법률의 편집 등, ④ 기타 유형의 법적 저작물(예: 교회 및 기업의 법적 규범). 이 중 눈여겨볼 만한 범주는 ③

번으로, 법률에 대한 논평과 편집 역시 법률저작에 대한 통일표제를 기록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입력지침에서 RDA 법률저작의 규칙과 그에 대한 독일어권 입력지침을 비교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DNB는 서지레코드 및 전거레코드를 MARC의 형태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DNB의 실제 입력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입력지침인 EH-W-03에 따라 살펴보았다. 해당 지침은 PICA3, Aleph, Aleph IDS, Alma에 따라 상이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이 중 Aleph IDS

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표 7> 참조).

주지하다시피 DNB의 입력규칙에서는 법률 등에 대한 논평 및 해설 저작을 일반 저작으로 보지 않고 우선표제와 전거형접근점 작성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논평 저작의 경우, 한 명이 하나 이상의 법률에 대해 법률해석을 하였다면 에이전트의 전거형접근점과 우선표제를 함께 기록하고, 여러 사람이 한 저작의 해설을 담당하였다면 첫 번째 해설자 또는 강조 표시된 해설자를 에이전트의 전거형접근점으로 두고, 에이전트의 전거형접근점과 우선표제를 함

<표 6> 독일어권 입력지침과 RDA 비교

	RDA 규칙	독일어권 입력지침
RDA 6.19.2 법률저작의 우선표제	헌법에 대한 별도 항목 없음	헌법의 경우, 원래 표제를 우선표제로 선정.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헌법(Verfassung)'이라는 용어를 우선표제로 선정 헌법 초안의 경우, 헌법초안 제목을 우선표제로 선정.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헌법의 우선표제에 '초안(Entwurf)'을 추가
RDA 6.19.2.5.2 단일 법령 등	단일의 법령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을 기록 ① 공식적 간략표제 또는 인용표제 ② 법률 문헌에서 사용된 비공식적 간략표제 또는 인용표제 ③ 법령의 공식표제 ④ 기타 공식적 표시(예: 법령번호, 일자)	단일의 법령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을 기록 ① 공식적 간략표제 ② 법률의 공식적인 완전표제 ③ 일반적인 인용표제 ④ 기타 공식적 표시(예: 연도, 지리적 날짜)
RDA 6.19.2.7 단일 조약집	단일 조약집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을 기록 ① 조약의 공식표제 ② 법률 문헌에서 사용된 간략표제 또는 인용표제 ③ 조약이 알려진 기타 공식적 표시	단일 조약집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을 기록 ① 법률 문헌에서 사용되는 간략표제 또는 인용표제 ② 조약의 공식표제 ③ 조약이 알려진 기타 공식적 표시
RDA 6.29.1.2 하나의 사법권에 적용되는 법률	하나의 사법권에 적용되는 법률의 경우, 법률이 적용되는 사법권을 나타내는 전거형접근점 + 법률의 우선표제를 조합하여 전거형접근점을 작성	독일 국토의 범위와 분단 단계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분단 단계로 인해 다음과 같이 기록: 현재 유효한 독일 법률의 경우, 독일을 법률이 적용되는 사법권으로 나타냄. 효력이 상실된 법률은 영토 주체인 독일의 연대기적 책임자가 지적 책임자로 기록됨
RDA 6.29.1.16 의정서, 개정사항 등	개별적으로 간행된 의정서, 개정, 확장, 기타 부수적인 협정서 등은 해당 조약을 나타내는 전거형접근점 + Protocols, etc. + 의정서 등의 일자를 조합하여 전거형접근점을 작성	개별적으로 간행된 의정서 등에 독립적인 제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개별적으로 간행된 의정서 등에 독립적인 제목이 있는 경우, 일반 규칙을 사용하여 전거형접근점을 작성

〈표 7〉 DNB의 법률저작 전거레코드 입력사례

법률 및 법률초안	하나 이상의 의회 그룹이 발의한 법안
110 ▼aDeutschland ▼bBundesregierung ▼tEntwurf eines Zweiten Gesetzes zur Änderung des Buchpreisbindungsgesetzes (110 ▼a독일 ▼b연방정부 ▼t도서정가법 개정 제2법 초안)	110 ▼aDeutschland ▼bDeutscher Bundestag ▼bFraktion der SPD ▼tEinwanderungsgesetz ▼gEntwurf (110 ▼a독일 ▼b독일 연방의회 ▼b사민당 의회 그룹 ▼t이민법 ▼h초안)
개별 의원 그룹의 법안, 정당 간 법안	조약
100 ▼aSensburg, Patrick ▼d1971- ▼tEntwurf eines Gesetzes über die Strafbarkeit der Teilnahme an der Selbsttötung (100 ▼a센스버그, 패트릭 ▼d1971- ▼t자살 가담 범죄화에 관한 법률 초안)	110 ▼aMadrider Markenabkommen ▼f1891 April 14 (110 ▼a마드리드 상표권 협정 ▼f1891년 4월 14일)

께 기록한다. 이렇게 작성된 전거데이터는 서지 데이터에 “통일표제”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데, DNB 온라인목록을 살펴보면 MARC 형태는 아니지만 구현형의 서지요소에 전거형접근점의 형태로 통일표제를 제공하고 있다.

### 3.3 북미권 대학도서관

국내 대학도서관 중 법률저작에 통일표제를 적용하고 있는 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북미권 대학도서관을 살펴본 결과, 북미권 대학도서관 역시 법률저작의 통일표제와 관련된 도서관의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RDA와 LC의 PCC-PS를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일부 적용방식에 있어서 상이한 사례가 존재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위해 법률저작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 예일대학(Yale University),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법률저작에 적용된 통일표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학도서관 역시 LC와 DNB

와 유사하게 법전 등에 해당하는 저작에 대해서는 통일표제를 적용하여 기술하는 반면, 법률을 다루었지만 개인저자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저작에 대해서는 통일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음 사례는 저작권법 원저에 해당하는 법률저작으로, 통일표제가 적용된 사례이다.

〈Harvard University와 Yale University〉  
 110 1# ▼aGreat Britain  
 240 10 ▼aCopyright Act, 1956. ▼lGerman. ▼f1958  
 245 10 ▼aCopyright Act, 1956 / ▼cmit einer Einführung von S.J. Rubinstein  
 〈University of Washington〉  
 110 1# ▼aThailand  
 240 10 ▼aCopyright Act 1978  
 245 10 ▼aCopyright act, B.E. 2521 (1978)

이에 더해 저작에 법률 등의 일부가 포함된 경우, 개인·가계·단체의 저작으로 취급하여 통일표제를 적용하지는 않지만 분출표목 형식으로 통일표제를 작성한다. 도서관에 따라 식별기호를 일부 상이하게 적용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전거형접근점(710 필드)을 활용하여 작성

하고 있다.

〈Harvard University〉  
710 12 ▼aGreat Britain.▼tCopyright Act 1842  
〈Yale University〉  
710 12 ▼aCanada.▼tCopyright Act.▼f1992.  
〈University of Washington〉  
710 12 ▼aUnited States.▼tCopyrights (1976)

위의 사례와 유사하지만 저자의 해석이나 해설 등이 강조된 저작은 일반 저작으로 간주하여 통일표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저자(100 필드 혹은 110 필드)와 우선표제(245 필드)를 결합하여 저작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한다. 이에 더해 동일 자료이나 도서관에 따라 통일표제가 상이하게 적용된 경우도 있다. 가령, 예일대학에서는 저작권법과 관련한 해당 자료(The Copyright Act, 1911, annotated)에 대해 통일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하버드대학에서는 해당 자료를 개인저자의 일반저작으로 취급하여 통일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동일 자료라도 사서의 판단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컨대 통일표제의 적용과 활용은 실제 입력된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국가도서관 뿐 아니라 북미권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법률저작에 적용된 통일표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모든 법률저작에 통일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법전 등에 해당하는 저작에 대해서는 통일표제를 적용한 반면, 법률을 다루었지만 개인·가계·단체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저작에 대해서는 통일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는 점이다.

둘째, 통일표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의 특성에 따라 필드의 용법을 상이하게 적용한다. 가령, 법률 자체를 다루고 있는 저작은 110 필드와 240 필드, 혹은 130 필드를 활용하여 통일표제를 기술하였으나, 법률 원문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 저작은 710 필드 혹은 730 필드를 활용하여 분출표목 형식으로 통일표제를 작성한다.

셋째, 동일한 자료에 대해 통일표제를 적용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듯이,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적용 범위는 구현형의 표제 등을 보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서가 자료를 직접 보고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만큼 통일표제의 적용여부를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기본표목 및 분출표목으로 통일표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법률저작에서는 주제명표목(630 필드)을 활용하여 매우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주제명을 제공하고 있다.

## 4.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작성지침(안)

### 4.1 적용범주 및 고려사항 검토

국내 실정에 적합한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작성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법률저작의 서지데이터를 대상으로 적용범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8월 기준, 국립중앙도서관의 KDC 법률(360번대) 도서(온라인자료 포함)에 해당하

는 105,901건 중 53,815건의 데이터를 임의로 추출하여 개괄적인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법률저작의 서지레코드는 통일표제(110, 130, 730 필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표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기 보다는 (1) 입력된 서지데이터를 활용하여 통일표제 적용범주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2)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작성지침 개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 4.1.1 적용범주 검토

주지하다시피 법률저작의 통일표제는 RDA, NCR, KCR5 개정안에서 거의 유사하게 총 5개 유형(법률, 법률집, 고대법/중세법/관습법 등, 조약, 조약집)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5개 유형에 해당하는 KDC 분류기호를 53,815건에 적절히 대응시키고 이에 해당되는 레코드를 산출하여 적용범주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표 8>에서와 같이 5개 유형 중 4개 유형(단일법령과 법령집 & 단일조약과 조약집)은 복수의 저작을 포괄하고 있어 KDC 분류기호가 완전히 대응되지 않았다. 가령, KDC 분류기호는 법령

집과 판례집을 동일 분류기호에 분류하고 있지만 판례집은 통일표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기호만으로 통일표제 적용범주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기호를 활용한 통일표제 적용 대상 도출 결과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법률저작 중 통일표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법령집에 해당하는 분류기호(KDC3, 4판은 360.2, KDC5판은 360.0023, KDC6판은 360.023)의 자료는 판례집을 동시에 포함하기는 하지만 907건이었으며, 조약집(한국조약 KDC6판 361.311, 국제조약 361.3)은 144건으로 나타나 통일표제를 적용할 법률저작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해당 분류기호에 분류되는 자료 중 개인·가계·단체의 저작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료가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표제를 적용할 자료는 더욱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고대법, 중세법, 관습법에 해당하는 자료가 17건에 불과하여 해당 자료를 대상으로 통일표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통일표제란 서로 다른 표제

<표 8> 통일표제 적용 범주

통일표제 적용 대상	KDC 분류기호가 배정된 표목	KDC 분류기호	서지레코드(건)
단일 법령 등 법령집 등	법령집 & 판례집	6판 360.023 (5판 360.0023 / 4판 360.2 / 3판 360.2)	907
고대법/중세법/관습법 등	고대법, 로마법, 중세유럽법, 관습법	고대법 360.53 로마법 360.54 중세유럽법 360.55 관습법 360.57	17
단일 조약집 조약집	조약집	한국조약 361.311 국제조약 361.3	144

로 알려져 있는 자료를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해 작성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소수에 불과한 고대법/중세법/관습법 등과 관련한 법률저작에 통일표제 적용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

한편, KDC 분류기호는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적용대상인 5개 유형과 완전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6XX에 입력된 주제어(통제어와 비통제어 포함)를 활용하여 재확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분류기호를 활용한 분석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통일표제 적용 대상의 법률저작(830건)은 크게 많지 않으며, 법령집(780건)과 조약집(30건) 자료가 일부 존재하지만 특히 고대법/중세법/관습법 등에 해당하는 자료는 13건에 불과하여 통일표제 작성이 큰 의미가 없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목록규칙에서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작성 대상으로 삼고 있는 5개 유형(법률, 법률집, 고대법/중세법/관습법 등, 조약, 조약집) 중 국내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고대법/중세법/관습법 등은 통일표제 적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1.2 지침개발시 고려사항

지금까지 목록규칙과 주요 국가도서관의 입력지침 및 입력사례,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서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작성지침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고려사항은 적용대상에 대한 고민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법률저작의 서지데이터를 대상으로 추출한 샘플레코드를 분석한 결과, 단일 법령과 법령집, 단일 조약과 조약집을 통일표제 작성지침의 대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단일 법령과 법령집은 목록규칙에 따라 지칭하는 법령의 범주가 상이하다. 가령, RDA는 통일표제 적용대상을 헌법, 법률, 명령, 시행규칙까지 포함한 반면, NCR과 KCR5 개정안은 헌법, 법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어디까지 통일표제 적용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국내 단행본의 경우 법률만을 다룬 자료보다는 법률과 명령, 시행규칙까지 포함한 법률저작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통일표제 작성지침은 법률, 명령, 시행규칙까지 다루는 자료까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된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통일표제의 추가 요소의 적용 정도이다. 주지하다시피 법률저작의 통일표제는 통일표제(예: 저작권법)만으로, 혹은 통일표제와 추가 요소(예: 저작권법 1911)로 구성된다. RDA, NCR, KCR5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통일표제의 추가 요소는 저작의 일자(법률의 공포일자, 조약의 일자)나 기타 식별특성으로, 법률과 조약에 따라 추가되는 요소가 일부 상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표제 작성지침 개발시 고민해 볼 문제는 통일표제의 추가 요소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이다. 가령, LC의 서지데이터에 입력된 영국의 저작권법(Copyright Act)을 사례로 작성한 저작 및 표현형 전거형접근점의 예시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에서와 같이 LC의 경우에도 조약은 <통일표제+통일표제 추가요소인 일자>를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언어 요소는 일부 추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목록규칙에서 제시한 표현형의 일자나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

〈표 9〉 전거형접근점의 구성 예시

유형	구분	전거형접근점의 예시	비고
법률	통일표제에 전거형접근점 요소 추가	110 1b ▼aGreat Britain. 240 10 ▼aCopyright Act	저작
	통일표제와 통일표제 추가요소에 전거형접근점 요소 추가	110 1b ▼aGreat Britain. 240 10 ▼aCopyright Act, 1956.	저작
	통일표제와 통일표제 추가요소에 전거형접근점 요소, 언어 추가	110 1b ▼aGreat Britain. 240 10 ▼aCopyright Act, 1956.▼lGerman.	표현형
	통일표제와 통일표제 추가요소에 전거형접근점, 요소, 일자 추가	110 1b ▼aGreat Britain. 240 10 ▼aCopyright Act, 1956.▼f1958.	표현형
	통일표제와 통일표제 추가요소에 전거형접근점, 요소, 언어, 일자 추가	110 1b ▼aGreat Britain. 240 10 ▼aCopyright Act, 1956.▼lGerman.▼f1958	표현형
조약	통일표제	130 00 ▼aTreaty of Versailles	저작
	통일표제에 추가 요소	130 00 ▼aTreaty of Versailles ▼d(1919 June 28)	저작
	통일표제에 추가요소 및 언어 추가	130 00 ▼aTreaty of Versailles ▼d(1919 June 28).▼lFrench	표현형

(출처: LC Authorities)

(판(version))을 기록한 사례는 거의 없으므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통일표제 지침에서도 목록규칙에서 제시한 저작 및 표현형 접근점의 요소들을 모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법률저작은 자료가 방대하지 않은 까닭에 접근점의 구성요소를 모두 적용할 경우 자료의 집중 기능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 4.2 통일표제 작성지침(안)

각국의 목록규칙, 도서관의 입력지침 및 입력사례 분석결과 뿐 아니라 앞서 검토한 통일표제 적용범주와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차적으로 통일표제 작성지침 초안을 도출하였다. 이어,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실무진의 검토와 법학 전문가 및 통일표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앞서 언급한 고려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보완요청을 반영한 통일표제 작성지침(안)을 최종 개발하였다.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4.2.1 통일표제 작성 범위

법률저작 중 통일된 형식의 표제를 적용해야 할 대상은 (1) 법령 등(단일 법령, 법령집)과 (2) 조약(단일 조약, 조약집)이다. 통일표제 작성지침에서 다루지 않는 법률저작(가령, 고대법·중세법·관습법, 법원규칙, 헌장 등, 판례집, 재판기록, 시행규칙 등)은 개인·단체의 저작으로 간주한다. 또한, 법령 등과 조약을 토대로 개인·단체가 발간한 저작(강해, 해석, 해설, 사례, 실무지침, 가이드라인, 교재, 수험용 요약집 등)도 개인·단체의 저작으로 간주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통일표제』(2021)를 적용하고, 통일표제를 주제명 부출한다.

#### 4.2.2 법령 등의 통일표제 선정과 기록

저작이 법령 원문이거나 저작의 대부분이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통일표제를 적용한다. 그리고 단일 법령은 입법 기관의 공식 공포문(공식 관보) 등을 포함한 참고정보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간략표제(약칭 법률명) 혹은 인용표제를 통일표제로 한다. 만약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간략표제 혹은 인용표제가 없을 때에는 법령의 공식표제를 통일표제로 선정한다. 이에 더해 법률집(법률의 합집)과 법령집(법률과 명령의 합집)은 종합표제가 없는 경우 법률집/법령집에 수록된 개별 법률명을 각각 기록하고, 종합표제가 있는 경우 종합표제를 통일표제로 한다. 가령, 자료의 표제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인 경우, 단일 법령에 대한 통일표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간략표제인 “생명윤리법”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이 두 줄로 표기되어 있는 자료는 종합표제가 없는 법률집이기 때문에 개별 법률의 간략표제인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통일표제로 기록한다. 반면, 종합표제가 있는 법령집인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은 통일된 형식의 우선표제가 아닌 구현형의 표제가 우선표제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으로 기록한다.

법령 등에서 통일표제로 선정되지 않은 표제는 이형표제로 기록하며, 언어가 다른 표제, 동일 언어의 다른 표제, 상세도가 다른 표제(가령, 약칭표제나 인용표제를 통일표제로 선정할 경우 공식표제 등의 상세도가 다른 표제)도 이형표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의 사례는 다

음과 같으며, 기본표목을 인정하지 않는 KCR4에 따라 240 필드에는 통일표제를, 710 필드에는 사법권을 나타내는 국가명을 ▼a에 기술하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는 “710 ▼a국가명. ▼b하위기관”과 같이 기술한다. 이 때 정부기관 외의 단체에서 발행한 자료는 책임표시사항에 기술된 단체명의 전거형접근점과 구분하여 “710 ▼a국가명. ▼4aut”를 별도로 기술한다.

```

<서지데이터>
240 10 ▼a생명윤리법
245 10 ▼a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d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
710 00 ▼a한국. ▼b법제처. ▼b국가법령정보센터
<전거데이터>
110 00 ▼a한국. ▼t생명윤리법
410 00 ▼a한국. ▼t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410 00 ▼a한국. ▼tBioethics and safety act
    
```

법령 등의 저작이 한 저작과 동일한 통일표제를 가진 상이한 저작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의 일자와 기타 식별특성을 추가한다. 법률의 일자는 법률저작과 관련된 가장 앞선 일자로, 법률이 공포되거나 효력이 발생한 법률의 공포일자를 의미하며, 서력을 기준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활용해 연도 4자리로 기록한다.

```

<서지데이터>
240 10 ▼a국가계약법 (1995)
245 10 ▼a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b법령·시행령·시행규칙
        / ▼d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편
710 00 ▼a한국. ▼b법제처. ▼b국가법령정보센터
<전거데이터>
046 00 ▼k1995
110 00 ▼a한국. ▼t국가계약법 (1995)
    
```



410 ㄴㄴ ▼a한국.▼t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995)  
 410 ㄴㄴ ▼a한국.▼t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1995)  
 410 ㄴㄴ ▼a한국.▼tGovernment contracts act (1995)

여기에 한 저작의 표현형과 상이한 표현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표현형의 일자, 언어,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 중 하나 이상의 요소를 추가하여 작성한다.

<서지데이터>  
 240 10 ▼a관세법.▼l영어  
 245 10 ▼aCustoms act of Korea /▼d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60 ㄴㄴ ▼aWashington:▼b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1996  
 710 ㄴㄴ ▼aUnited States.▼b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710 ㄴㄴ ▼a한국▼4aut  
 <전거데이터>  
 110 ㄴㄴ ▼a한국.▼t관세법.▼l영어  
 410 ㄴ0 ▼a한국.▼tCommercial act.▼l영어  
 410 ㄴ0 ▼a한국.▼tLoi sur les douanes.▼l영어

4.2.3 조약의 통일표제 선정과 기록

조약은 저작이 조약의 원문이거나 저작의 대부분이 조약에 해당하는 경우 통일표제를 적용한다. 다자간의 조약의 경우, 조약의 공식명칭을 통일표제로 하고, 만약 조약의 공식명칭이 없을 시, 참고정보원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간략 표제 혹은 인용표제, 그리고 조약이 알려진 기타 공식적 명칭 순으로 통일표제를 선정한다. 조약집(조약의 합집)은 종합표제가 없는 경우 조약집에 수록된 개별 조약의 명칭을 각각 기록하고, 종합표제가 있는 경우 구현형의 종합표제

를 통일표제로 한다. 가령, 자료의 표제가 『대일 평화조약』의 경우, 다자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조약의 공식명칭인 “Treaty of San Francisco”을 통일표제로 선정하여 기록한다. 이에 더해, 자료가 암스테르담조약과 니스조약이 두 줄로 표제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표제가 없는 조약집이기 때문에 개별 조약의 공식명칭인 “Treaty of Amsterdam”과 “Treaty of Nice”을 통일표제로 두고, 종합표제가 있는 조약집인 『조약협정』은 구현형의 표제인 “조약협정”을 통일표제로 한다.

통일표제로 선정되지 않은 표제는 이형표제로 기록하며, 체결자를 나타내는 전거형접근점에 조약의 공식명칭을 추가하여 이형접근점을 작성한다. 이러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의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서지데이터에서는 710 필드를, 전거데이터에서는 130 필드를 활용하여 기술한다.

<서지데이터>  
 245 00 ▼a암스테르담조약 ; ▼a니스조약 /▼d장준호, ▼e김상수, ▼e김일근, ▼e박상준 번역·해제: ▼e채형복 보론: ▼e랄프 하베르츠 지음  
 700 ㄴㄴ ▼a장준호,▼d1970-  
 ...  
 730 ㄴ0 ▼aTreaty of Amsterdam  
 730 ㄴ0 ▼aTreaty of Nice  
 <전거데이터 1>  
 130 ㄴ0 ▼aTreaty of Amsterdam  
 370 ㄴㄴ ▼g시칠리아 섬▼2nlsh  
 380 ㄴㄴ ▼a조약[條約]▼2nlsh  
 410 ㄴㄴ ▼a벨기에.▼tTreaty of Amsterdam  
 410 ㄴㄴ ▼a덴마크.▼tTreaty of Amsterdam  
 ...  
 430 ㄴ0 ▼a신유럽연합조약  
 430 ㄴ0 ▼a암스테르담조약

<전거데이터 2>  
 130 80 ▼aTreaty of Nice  
 370 88 ▼g니스(프랑스)[Nice]▼2nlsh  
 380 88 ▼a조약[條約]▼2nlsh  
 410 88 ▼a독일.▼tTreaty of Nice  
 ...  
 430 80 ▼a니스조약  
 430 80 ▼aΝίκαια, Συνθήκη της

조약 관련 저작이 한 저작과 동일한 통일표제를 가진 상이한 저작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약의 일자와 기타 식별특성을 추가한다. 조약의 일자는 조약의 채택, 체결을 위한 공개, 공식 체결, 비준, 공포 등이 이루어진 가장 앞선 일자로, 연, 월, 일 순으로 기록한다. 단일 조약은 조약의 일자나 의정서의 일자를 기록하고, 조약집은 가장 앞선 일자와 가장 나중의 일자를 기록한다. 조약의 부수적 또는 보충적 내용을 다루는 의정서, 수정서, 확장서 또는 그 외 조약협정의 부속 문서 등은 이를 나타내는 어구로 “의정서 등”을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의정서 등의 일자를 추가한다.

<서지데이터>  
 245 00 ▼a(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 추가의정서: ▼b국·영문 대역본 /▼d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편]  
 710 88 ▼a대한적십자사.▼b인도법연구소  
 730 80 ▼aGeneva conventions ▼d(1949.8.12.).▼k의정서 등  
 <전거데이터>  
 046 88 ▼k19490812  
 130 80 ▼aGeneva conventions ▼d(1949.8.12.).▼k의정서 등  
 370 88 ▼g주네브[Geneve]▼2nlsh  
 380 88 ▼a조약[條約]▼2nlsh  
 430 80 ▼a제네바 협약▼d(1949 August 12).

▼kProtocols, etc.  
 430 80 ▼aConventions de Genève ▼d(1949 août 12).▼kProtocoles, etc.  
 430 80 ▼aGenèvekonventionerna ▼d(1949 août 12).▼kProtocoles, etc.

조약 관련 저작이 한 저작의 표현형과 상이한 표현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표현형의 일자, 언어,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 요소 중 하나 이상의 요소를 추가하여 작성한다.

<서지데이터>  
 240 10 ▼aCopyright act (1911).▼1영어.▼f1958  
 245 10 ▼aCopyright law in Austria /▼dPrepared by Legal Division, Counsel Branch, USACA  
 710 88 ▼aUSACA  
 710 88 ▼aAustria▼4aut  
 <전거데이터>  
 110 88 ▼aAustria.▼tCopyright act (1911).▼1영어.▼f1958  
 410 80 ▼a오스트리아.▼tCopyright Act (1911).▼1영어.▼f1958  
 410 80 ▼a오스트리아.▼tCopyright Law (1911).▼1영어.▼f1958

### 5. 결론

정보조직은 개념모형을 중심으로 목록원칙, 목록규칙, 인코딩 형식이 상호 연계되어 변화하고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발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은 데이터의 상호 연결로,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의 구조적 연결을 위해 필요한 전거형접근점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거형접근점의 구성요소인

우선표제는 단독으로 혹은 우선표제에 다른 요소(에이전트 및 형식, 일자 등)를 추가하여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을 구성하기 때문에 우선표제의 선정과 기록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일 저작이 상이한 표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 법률저작의 집중기능을 높이기 위해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작성지침을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률저작에 대해 별도로 다루고 있는 RDA와 NCR, KCR2, KCR5 개정안의 법률저작에 관한 규칙을 분석하고, LC와 DNB, 북미권 대학도서관 등의 입력지침과 적용사례를 살펴본 후, 국립중앙도서관의 샘플데이터를 대상으로 법률저작의 통일된 형식의 우선표제 작성을 위한 범주와 고려사항을 살펴본 다음,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작성지침(안)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작성지침에서 눈여겨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적용대상이다. 본 연구는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작성대상을 법령 등(단일법령과 법령집)과 조약(단일조약과 조약집)으로 하되, 국내 법률저작의 특성을 고려하여 헌법, 법률, 명령, 시행규칙까지 대상으로 하는 단일 법령과 법령집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단일 법령 혹은 법령집이라고

해도 법령의 원문을 다루거나 저작의 대부분이 법령이거나 법령 원문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통일표제를 적용하고, 개인·단체의 저작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료는 통일표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서의 주의깊은 판단이 필요하다. 또 하나 눈여겨볼 내용은 동일한 통일표제를 가진 상이한 저작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부가할 추가요소의 범위이다. 목록규칙에서는 통일표제의 추가요소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와 LC 입력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추가요소를 부가할 경우 오히려 법률저작의 집중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법률 및 조약 일자, 표현형의 경우 표현형의 언어 정도만 부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표제와 전거형접근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작성지침 개발을 목적으로 시도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작성지침이 작게는 법률저작의 통일된 표제기술 방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크게는 실제 데이터로 구현되는 우선표제 및 전거형접근점의 이해를 돕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노지현 (2021). 종교 저작에 대한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과 범위 탐색.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4), 153-177. <http://dx.doi.org/10.16981/kliss.52.4.202112.153>
- 노지현 (2023). 종교저작의 우선표제 및 전거형접근점 적용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4), 105-122. <http://dx.doi.org/10.16981/kliss.54.4.202312.105>

- 노지현, 이미화, 이은주 (2023). 목록이론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손정표 (2005). 서양 고전음악 녹음자료의 국문 통일표제 기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17, 39-78.
- 손정표 (2007). 한국 전통음악 녹음자료의 통일표제 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425-454.
- 이미화 (2016). 저작 및 표현형 전거레코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71-94.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9.71>
- 이미화 (2018). 음악 저작의 전거형접근점 규칙 마련시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147-166.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12.147>
- 한국도서관협회 (1966). 한국목록규칙 (수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2003). 한국목록규칙 (제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日本圖書館協會 (2018). 日本目錄規則 2018年版.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Available:  
<https://www.jla.or.jp/committees/mokuroku/ncr2018/tabid/787/Default.aspx>
- DACH (2017). Anwendungsrichtlinien für den deutschsprachigen Raum(D-A-CH AWR). Available:  
<http://original.rdatoolkit.org/nlgpschp0.html>
- Deutsche National Bibliothek. Available: [https://www.dnb.de/EN/Home/home\\_node.html](https://www.dnb.de/EN/Home/home_node.html)
- Harvard Library. Available: <https://library.harvard.edu/>
- LC-PCC (2017). Library of Congress-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 Policy Statements. Available: <http://original.rdatoolkit.org/lcpschp0.html>
- Library of Congress Authorities. Available: <https://authorities.loc.gov/>
- Library of Congress Catalog. Available: <https://catalog.loc.gov/index.html>
- RDA Steering Committee. RDA original toolkit. Available: <https://original.rdatoolkit.org/>
- University of Washington Library. Available: <https://www.lib.washington.edu/>
- Yale University Library. Available: <https://library.yale.edu/>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orea Library Association (1966). Korean Cataloging. Rules (2nd ed.).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 Korea Library Association (2003). Korean Cataloging. Rules (4th ed.).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 Lee, Mihwa (2016).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work and expression authority record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3), 71-94.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9.71>

- Lee, Mihwa (2018). A study on the considerations in rules for authorized access points of music work.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4), 147-166.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12.147>
- Rho, Jee-Hyun (2021). Exploring the revision direction and scope of the Korean cataloging rules for religious work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4), 153-177. <http://dx.doi.org/10.16981/kliss.52.4.202112.153>
- Rho, Jee-Hyun (2023). A study on constructing preferred titles and authorized access points for religious work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4(4), 105-122. <http://dx.doi.org/10.16981/kliss.54.4.202312.105>
- Rho, Jee-Hyun, Lee, Mihwa, & Lee Eun-Ju (2023). *Cataloging Theory and Practice*.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 Sohn, Jung-Pyo (2005). A study on the description of Korean uniform title in sound recordings of the Western classical music. *Journal of Social Science*, 17, 39-78.
- Sohn, Jung-Pyo (2007). A study on the formulation of uniform title for sound recording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3), 425-454.